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4305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716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43056 판결

### 전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이고은

피 고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2.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필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5.

## 주 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92,581,321원, 원고 B에게 51,054,214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1.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53,635,5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2,581,321원, 원고 B에게 51,054,214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2,581,321원, 원고 B에게 51,054,214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이 사건 2021.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9.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73,635,535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각 돈 중 원고 A에게 112,581,321원, 원고 B에게 51,054,214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F의 사망

피고 D은 2019. 5. 16.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살해하였다. 피고 D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2019. 11. 15.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19고합281호)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23:00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가게를 마치려고 한다. 사장님, 술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올라가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느냐’고 말하며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자신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그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 회 힘껏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8.5cm, 19.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약 12cm의 목 앞면을 가로지르는 절창을 가한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오른 갈비뼈 아래 부위에서부터 명치 부위에 이르기까지 약 24cm 상당의 절창을 가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얼굴 부위의 손상 및 목과 배 부위 절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나. 망인의 가족관계

1)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원고 A와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원고 A의 상속분 3/5, 원고 B의 상속분 2/5). 2)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자 망인의 시어머니이다.

다. 피고 D의 부동산 처분 등

1) 피고 D은 2019. 6. 18. 자신의 동생인 H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E은 2019. 6. 26.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132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은 망인을 살해한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망인의 일실수입: 143,011,296원

##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1) 성별 및 생년월일: 여자, J생(사망 당시 만 K)
-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30.86년, 2050. 3. 17.
- (3) 가동기간: 망인이 만 65세가 되는 L까지.
- (4) 소득: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 기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125,427원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2,759,394원
- (5)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 (6)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43,011,296원이 된다.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노임단가    | 일수 | 월소득       | 생계비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2019-5-16   | 2027-2-07 | 125,427 | 22 | 2,759,394 | 1/3 | 92 | 77,7406 | 0  | 0    | 92   | 77,7406 | 143,011,296 |
| 일실수입 합계액(원) |           |         |    |           |     |    |         |    |      |      |         | 143,011,296 |

## 2) 장례비: 원고 A 5,000,000원

경험칙에 의하면 원고 A가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위자료

살인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의 사망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나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범인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호관계나 재산상태,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살인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피고 D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피고 D의 범행으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D은 여전히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0원,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망인의 시어머니인 원고 C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243,011,296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43,011,296원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 나) 상속금액

(1) 원고 A: 145,806,777원(= 243,011,296원 × 상속지분 3/5)(2) 원고 B: 97,204,518원(= 243,011,296원 × 상속지분 2/5)

#### 5) 공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D이 2020. 4. 27. 원고 A를 상대로 18,000,000원, 2020. 4. 28. 원고 B를 상대로 12,000,000원을 각 공탁한 사실, ②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등으로 2019. 5. 30. 4,000,000원(장례금), 2019. 7. 19. 110,375,760원(구조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B 역시 자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에서 원고 A의 경우 88,225,456원[= 형사공탁금 18,000,000원 + 장례비 4,000,000원 + 구조금 110,375,760원 중 원고 A의 상속비율에 따른 66,225,456원(= 110,375,760원 × 3/5)]이, 원고 B의 경우 56,150,304원[= 형사공탁금 12,000,000원 + 구조금 110,375,760원 중 원고 A의 상속비율에 따른 44,150,304원(= 110,375,760원 × 2/5)]이 각 공제되어야 함은 다투고 있지 않다.

#### 6) 계산

이에 따라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 피고 D의 손해배상액 [단위: 원]

| 순번 | 원고 | 상속대상액       | 장례비       | 위자료        | 공제           | 인용금액        |
|----|----|-------------|-----------|------------|--------------|-------------|
| 1  | A  | 145,806,777 | 5,000,000 | 30,000,000 | - 88,225,456 | 92,581,321  |
| 2  | B  | 97,204,518  |           | 10,000,000 | - 56,150,304 | 51,054,214  |
| 3  | C  |             |           | 10,000,000 |              | 10,000,000  |
| 합계 |    |             |           |            |              | 153,635,535 |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92,581,321원, 원고 B에게 51,054,214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5. 16.부터 이 사건 2021.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1.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일부 기각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은 이 사건 2021.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3.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거나 자신들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각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피고 D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86,550,000원 상당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 합계만 하더라도 298,011,295원[= 원고 A에 대한 채무 합계 180,806,777원(=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 A의 상속분 145,806,777원 +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및 장례비 채무 합계 35,000,000원) + 원고 B에 대한 채무 합계 107,204,518원(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 B의 상속분 97,204,518원 + 원고 B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 원고 C에 대한 위자료 채무 10,000,000원]에 달한다.

[표2]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적극재산

| 순번 | 항목 | 가액(원) | 비고 |
|----|----|-------|----|
|----|----|-------|----|

|    |                              |             |                                                                                                                                                         |
|----|------------------------------|-------------|---------------------------------------------------------------------------------------------------------------------------------------------------------|
| 1  | 이 사건 아파트                     | 200,000,000 | 피고 E은 2019. 6. 26.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I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I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200,000,000원으로 감정하였다(피고 E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함에는 이의가 없다). |
| 2  | 대구 달성군 M 답 70평               | 60,000,000  | 갑 제8호증의 1                                                                                                                                               |
| 3  | 대구 달성군 N 전 237m <sup>2</sup> | 26,550,000  | 갑 제8호증의 2                                                                                                                                               |
| 합계 |                              | 286,550,000 |                                                                                                                                                         |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재산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피고 D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D의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D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피고 D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E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 E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피고 D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다.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여 오던 중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매수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O은행, P 은행, Q은행, R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 E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 E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D을 대리한 H과 사이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 D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므로 대리인 동생 H이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로 위임한 계약임’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 E으로서의 피고 D의 구체적인 범행 내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1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19. 6. 26. I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I은 위 아파트의 감정가격을 200,000,000원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대금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이는 피고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7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매매대금을 지불할만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필요한 매매대금 중 3,000,000원을 제외한 147,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107,000,000원은 지인 S(67,000,000원)과 아들 T 및 며느리 U(각 20,000,000원)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 E에게 돈을 대여하여 준 S, T, U 역시 각 대여금 전부 또는 상당액을 보험담보대출 또는 카드론 대출로 마련하였는데, 피고 E이 위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다시 빌려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 E은, 종래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V아파트)에서 월세(보증금 20,000,000원, 월세 450,000원)로 거주하여 왔는데 월세 및 관리비가 비싼 데다가 임대인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나가야 할 상황이었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것이고, I으로부터 대출받은 140,000,000원의 이자가 위 월세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 E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위 V아파트 W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나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E은 당초 예정된 임대차기간(2016. 12. 15.부터 2018. 12. 15.까지)을 초과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달리 그 주장과 같이 임대인의 요구로 퇴거해야 할 사정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 피고 E이 I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르면 피고 E은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고 E이 매월 부담하게 되는 원리금은 위 월세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 E은 2019. 6.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X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이 피고 D 또는 H과 일면식이 없는 상태인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D을 대리한 H과 체결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E은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역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 E은 굳이 나머지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 E은, 피고 D이 구치소에 수감된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대금을 보관하기로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 E이 피고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E 입장에서는 이미 가계약금을 X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둔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매매대금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간명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⑤ 오히려 피고 E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하게 된 것은 피고 D 측이 현금이나 수표 등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 E 역시 피고 D 측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 2)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E이 2019. 6. 18.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9. 6. 26. I에 채권최고액 15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E이 위 아파트를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피고 D에게 이전해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과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와 유사한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합계액인 153,635,535원(= 원고 A 92,581,321원 + 원고 B 51,054,214원, 원고 C 10,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액인 153,635,5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53,635,5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2,581,321원, 원고 B에게 51,054,214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E에게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각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한 채무이고, 달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들이 그와 같이 청구한 이상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공동지급 책임을 인정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참조)].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주혁, 판사 박병주, 판사 주재오

## 별지

| 목                                  | 목                                               |
|------------------------------------|-------------------------------------------------|
| (1동의 건물의 표시)                       |                                                 |
| 부산 중구                              | <input type="text"/> 아파트 <input type="text"/> 동 |
| [도로명주소] 부산 중구 <input type="text"/> |                                                 |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6층 공동주택(아파트)        |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1. 부산 중구                           | <input type="text"/> 대 9535.2㎡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 제9층                                | <input type="text"/> 호 철근콘크리트조 84.72㎡           |
| (대지권의 표시)                          |                                                 |
| 1. 소유권대지권 953520분의 3177            |                                                 |
| 끝.                                 |                                                 |

